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 지 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73호)]



2026.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73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유지웅 · 박미정 · 이은경 김지훈 · 안병두 · 신정태 하서영 의원(7명)	발의연월일	2026.03.13.
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훈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안 제6조)

나. 약칭, 띄어쓰기, 중복 표현, 인용 조문 정비 등 (전체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03. 17. ~ 2026. 03. 22.(5일),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인 연임 규정을 명시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2. 주요 조례안 검토

- 안 제6조(임기)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문¹⁾에서 “2년 임기, 재위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임과 관련해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과의 특혜 의혹, 친소관계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 제한 우려 등이 있음.

1)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축할 수 있다.

- 한편, 우리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연임 제한이 없어 재위축이 이뤄지고 있고, 장기 연임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A	B	C
위 축 일 (최초)	2024.02.10. ※2026.02.10.재위축	2024.03.16. ※2026.03.16.재위축	2024.06.08.
임 기	2026.02.10.~ 2028.02.09.	2026.03.16. ~ 2028.03.15.	2024.06.08. ~ 2026.06.07.

- 이에 따라, 안 제6조(임기)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부패발생 우려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의 약칭 사용, 안 제4조, 안 제5조의 띄어쓰기, 안 제9조의 제명의 문장부호 사용 등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되었음.

4. 종합검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발생 우려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음.